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그에 따른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함. (세정 13407-912, 2000. 7. 14)

### 3. 취득세 과세표준

#### 【질 의】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신고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서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부동산의 취득세의 신고제도와 검인계약서제도는 그 목적도 다르고 근거 법률도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검인계약서의 절차 및 내용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지방세법 소정의 양식에 의거 취득세를 자진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귀부의 공식견해를 회신 바랍니다.

#### 회 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조 동항 각호에 기재된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됨.

(세정 13407-908, 2000. 7. 14)